

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5일

광진구청장

1.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

○ 신속통합기획(주택 재개발) 예정지 : 구역변경 1개소(120,702.8㎡)

대상지역			면적(㎡)		비 고
			변경 전	변경 후	
서울특별시	광진구	구의동 46 일대	105,957.2	120,702.8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			증 14,745.6		

○ 지정기간 : 변경 없음(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)
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도지역		면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
3. 공고기간 : 2026. 6. 25. ~ 2026. 7. 9.(15일간)
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: 붙임1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지번별 허가구역 해당 여부 확인 가능

6. 공람(열람)장소: 광진구청 홈페이지,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

※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(☎02-450-7764)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붙임 1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조정

1. 광진구 구의동 46-39 일대

